사회모벌규준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제 정 2010.12

목차

前文

Ⅰ. 근로자	
1. 고용 및 근로조건	5
2. 노사관계	7
3. 직장 내 보건 및 안전	عع
4. 인력 개발 및 지원	g
5. 직장 내 기본권	······ 1C
II. 협력사 및 경쟁사	
1. 공정거래	13
2. 부패방지	16
3. 사회적 책임 촉진	17
Ⅲ. 소비자	
1. 소비자와의 공정한 거래	19
2. 소비자 안전 및 보건	20
3.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	21
4. 소비자와의 소통	22
IV. 지역사회	
1. 지역사회 참여 및 공헌	23
2. 지역경제발전	24
3. 지역사회와의 소통	26

[모범규준의 제정 배경]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고조와 기업의 글로벌화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등장, 기후변화 등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국제화된 자본시장에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은 투자자들의 투자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책임은 더 이상 사회적 요구에 대한 수동적 대응의 문제가 아니며,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ISO 26000이나 SRI(사회책임투자) 지수들이 기업의 생산과 투자활동에 있어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기업의 이미지 제고나 홍보 측면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인식하여 기업 경영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사회적 책임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일관된 논의나 방향 제시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기업의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실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에 대한 기업의 인식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여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국내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한 사회책임경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 모범규준을 제정한다.

[모범규준의 제정 목적]

모범규준은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는 사회적 책임경영에 대한 원칙 및 규준 등 정보를 제공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기업들에게는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와 개선을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모범규준 제정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는 사회책임기업의 모범규준을 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모범규준의 내용과 구성]

본 모범규준은 우리 기업이 처해 있는 경영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국제적인 사회책임경영에 부합하는 원칙 및 규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현행 법령상의 요구를 존중하면서도 보다 미래지향적인 사회책임경영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모범규준의 내용은 전문(前文)과 본문(근로자, 협력사 및 경쟁사, 소비자, 지역사회)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범규준의 적용]

모범규준은 상장기업을 비롯한 공개기업을 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비공개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

기업의 환경은 기업마다 상이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화고 있어 사회책임경영은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은 본 모범규준을 기본으로 하되 자발적으로 사회책임경영을 구현하기 위한 내부적 제도를 설계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인 평가를 통하여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본 모범 규준도 시대적 상황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Ⅰ. 근로자

1. 근로자

-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노동권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
- 기업은 적정한 보상, 안정적인 고용 및 건강한 근무 환경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양질의 삶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 기업은 근로자에게 적절한 교육, 훈련 및 능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역량을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 으로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기업은 강제노동. 아동노동과 고용 및 직장 내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 기업은 단체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노사간의 효과적인 대화를 통해 건전한 노사관계를 형성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고용 및 근로조건

□ 기업은 기업이 속한 사회에 적합한 수준의 임금, 보상, 근무시간, 해고 관행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상해, 질병, 임신, 육아, 노령, 실직, 장애 등의 상황에 처한 근로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은 물론 일과 생활의 균형을 보장한다.

1.1 기업은 적정한 임금 및 양호한 근로조건을 제공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한다.

기업은 국가가 제공하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고용 관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바탕으로 고용주와 근로자의 상호이익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한다.

고용관계는 기업과 사회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동시에 의무를 부과한다. 따라서 고용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은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해야 하며, 계약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적절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업의 근로조건은 국내의 법과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최소한 국제노동기준을 상회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은 국내법 및 관행과 일치하는 임금 및 근로조건을 제공해야 하며, 만약 국내법에 해당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ILO 기준과 같은 국제노동기준에 정의된 최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의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은 임금, 근로시간, 휴가, 보건 및 안전, 출산 보호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근로자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강한 삶에 필요한 최저 수준 이상의 업무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1. 근로자

〈임 금〉

기업은 기업이 속한 사회에 적합한 임금 및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단체 교섭에 임해야 한다. 즉, 기업은 국가 및 지역 내 동종의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은 근로조건을 제공하며, 국가의 평균적인 임금 수준, 생활비, 사회보장 혜택 등을 반영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기업은 법과 단체교섭에 의해 최저 임금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최상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제공하고, 생활임금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임금 수준을 공개하도록 한다. 또한, 기업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제공한다. 다만, 법적 요건에 따라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임금 제한 및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근로시간〉

기업은 법정 근로시간 또는 주당 48시간 중 보다 적은 쪽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정하며 이를 공시하도록 한다. 또한, 기업은 7일 중 적어도 하루는 휴일로 제공해야 하며(단, 비상사태 등은 예외), 최소한 법률이 정하는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한다. 기본적으로 기업은 국가적·종교적 전통 및 주일 휴가 관례를 존중해야 한다.

기업은 초과근로에 대한 법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당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강제로 초과 근로를 시키지 않아야 한다. 또한, 기업은 초과근로 요청 시 근로자들에게 관련 위험에 대해 공지해야 한다.

1.2 기업은 지속적인 고용을 통해 근로자에게 안정된 삶을 제공한다.

안정적인 고용 창출은 개인과 사회에 모두 중요하므로 기업은 적극적인 고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하며, 관련 계획을 공개하도록 한다. 또한, 기업은 정규 고용을 보장하도록 노력하며, 업무가 단기적이거나 계절에 한정될 때를 제외하고는 과도한 기간제 근로나 임시직 활용을 피함으로써 고용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더불어 기업은 다국적 경영 시 진출국의 현지 기업들을 통한 공급과 배분망을 활용하여 진출국의 고용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한편, 기업은 사업장 폐쇄 등 고용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사전 통보를 하고, 적시에 정보를 공개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기업은 인력감축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하며, 재고용을 포함한 고용안정계획에 대해서도 공개하도록 한다. 즉, 기업은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아야 한다.

1.3 기업은 근로자의 상해, 질병, 임신, 육아, 실직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적절한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근로자에 대한 보호는 예기치 않은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또는 취약한 근로자 계층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의식주 및 의료 지원, 교육 기회 부여 등 기본적인 보호뿐만 아니라 상해, 질병, 노령, 장애, 임신, 육아, 실직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감시켜주는 관행을 포함한다.

따라서 기업은 근로자에게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돕는 육아휴가제도 및 보육시설 등의 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이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의 가족부양책임도 존중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근로자가 실직이나 퇴직, 질병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경우를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급격한 건강 악화 및 삶의 질 저하를 방지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인다.

무엇보다도 기업은 사회보험의 혜택을 근로자가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경력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고용보험을 포함한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하도록 한다.

2. 노사관계

□ 기업은 노사간의 효율적인 대화를 통해 고용주와 근로자 양측의 요구를 모두 고려함으로써 건전한 노사관계를 형성한다.

2.1 기업은 다양한 노사간 대화를 통해 소모적 분쟁을 최소화하고, 고용주와 근로자의 상호 이익을 증대시키도록 노력한다.

노사간 대화는 고용주 및 근로자뿐만 아니라 정부 대표도 포함하여 경제·사회적 공통 관심사에 대해 협상, 자문 및 정보 교환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대화는 노사협의체, 국가 단위의 노사정협의체 및 산업별 협의체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기업 수준의 정보 및 협의기구 역시 이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노사간 대화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상반된 의견을 보이지만 상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하게 되며,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선택한 대표자로서 노동조합은 노사간 대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효과적인 노사간 대화는 정책을 개발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며, 이러한 메커니즘은 문제 해결에 있어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고용주와 근로자 양측의 요구를 모두 고려하게 해 주며, 더 나아 가서 건전한 노사관계를 형성해 소모적 분쟁을 최소화한다.

1. 근로자

따라서 기업은 국가·산업체·기업 단위 등 각종 수준에 걸친 다양한 노사간 대화를 촉진하고 이에 참여 하도록 한다.

2.2 기업은 근로자의 다양한 고충을 논의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내부 시스템 등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공개하도록 한다.

기업은 근로자가 위험한 업무를 거부하거나 부당한 처우에 대해 조직 내부 및 정부 기관에 문제를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근로자가 업무 관련 절차 및 결정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직장 내 보건 및 <u>안전</u>

□ 기업은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에 힘쓰며, 건강하지 못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건강 훼손을 예방하고 관리해야 한다.

3.1 기업은 건강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여 근로자에게 양질의 삶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기업은 직장의 건강하지 못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 훼손을 예방해야 한다. 즉, 기업은 직장에서의 신체적 피로 및 심리·사회적 위험이 직업과 관련된 질병 및 스트레스의 원인이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건강을 해칠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생리적, 심리적 특성에부합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근로자들에게 깨끗한 식수 및 위생적인 음식 등을 제공하며, 청결하고 안전한 기숙사, 적절한 냉난방 및 환기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고,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적정 공간도 확보해 주어야 한다.

기업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여 제품과 서비스의 질 향상, 생산성 증대 및 근로자의 사기 진작 등을 도모할 수 있다.

3.2 기업은 산업안전 및 보건을 기업의 최우선 원칙으로 천명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며, 근로자들에게 안전 및 보건 교육을 실시한다.

기업은 기업 활동과 관련된 안전사고 및 보건 위험을 분석하고 통제해야 한다. 기업은 모든 안전사고와 보건 위험 및 근로자가 제기한 문제를 기록하고 조사하여 위험을 경감시키거나 제거해야 하며, 조사·분석 시 남녀 차이도 고려한다. 즉, 기업은 위기상황 및 사고에 대한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분석·평가해야 하며, 위기상황 보고, 근로자 대상 고지, 대피 절차, 근로자 훈련, 화재 감지 및 진압 장비, 비상구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을 포함하는 위기관리대책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다

특히 기업은, 산업 재해 및 직업병에 관한 예방/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산업 재해 및 직업병 발생 시이를 면밀히 조사 및 기록하고, 신속·정확히 보고하며, 이를 공개하도록 한다. 기업은 산업 재해 및 직업병 발생 시 피해 근로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며, 발생된 산업 재해 및 직업병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피해 근로자가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기업은 근로자가 안전 및 보건 관련 정보 획득, 문의 및 상담, 외부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산업 재해 등에 대해 정당하게 행사한 권리에 대해 보복 조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 기업은 특히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한 조치를 근로자의 비용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

또한, 기업은 작업장에서의 사고 및 질병 예방과 긴급 상황 발생 시 필요한 안전 장비를 제공해야 하며, 안전 및 보건 담당자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 및 보건 관련 이슈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4. 인력 개발 및 지원

□ 기업은 내부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인력 개발을 추진하여 근로자에게 양질의 삶을 보장하도록 한다.

4.1 인력 개발은 개인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므로 기업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업은 청년 실업 및 여성 임원진의 부족과 같은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거나 이러한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고려하며, 더 나아가서 외국인 및 장애인 근로자와 같은 취약집단에 대한 보호 및 배려를 통해 그들의 개인 능력 배양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공정한 임직원 성과평가시스템 및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피드백 시스템을 운영하고 공시하여 개인의 업무 능력 향상에 기여한다.

1. 근로자

4.2 기업은 근로자에게 교육 및 훈련 등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한다.

기업은 근로자에게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역량과 업무 능력 강화 등을 통해 건강한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은 근로자에게 교육, 훈련, 기술 개발 및 기술자 양성 제도 등의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해야 하며, 이를 공개하도록 한다. 또한, 기업은 근로자에게 창업 및 재취업을 위한 평생 교육 등을 실시하여 퇴직자를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한다.

5. 직장 내 기본권

□ 기업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 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직장에서의 기본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은 이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

-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인정 및 보장
- 강압적이거나 강제적인 노동의 금지
- 아동 노동 금지
- 고용 및 직장 내 차별 금지

5.1 기업은 단체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기업은 국내법에 따라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노사협의회) 가입 등을 인정해야 하며, 이를 공시하도록 한다.

기업은 근로자가 구성하거나 참여한 대표 조직들과의 단체교섭에 있어서 조합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고 지지해야 한다. 즉, 기업은 근로자가 자신들의 이익 보호나 단체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해 근로자 조직을 구성하거나 참여할 권리를 반대하거나 막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차별 해서는 안 되며, 배치전환이나 외주화로 협박하거나, 단체교섭권을 행사하고 근로자 조직을 구성하거나 참여하려는 근로자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기업은 어떠한 위협이나 보복 없이 근로조건에 관해 노사 양측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근로자 대표는 자신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하는 적절한 편익을 제공받아야 하며, 어떠한 간섭 없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근로자 대표는 의미 있는 협상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받아야 한다.

근로자 대표는 국내법과 규제, 단체협약에 따라 자유선거를 통해 조합원이나 관련된 근로자에 의해 선출 되어야 한다. 즉, 근로자 대표는 정부나 고용주가 선출한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5.2 기업은 근로자에 대해 강압적이거나 강제적인 노동을 시키거나 그로 인한 혜택을 누려서는 안 된다.

기업은 모든 형태의 강요되거나 강제된 노동을 배제해야 하며, 이를 공시하도록 한다. 기업은 어떠한 업무나 서비스도 당사자가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요하거나 처벌에 대한 위협 때문에 수행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기업은 강압적인 담보노동을 척결해야 한다. 즉, 기업은 보증금, 신분증/여권, 취업허가증 등을 담보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야 한다.

5.3 기업은 아동 노동에 관여하거나 이를 통해 이윤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기업은 제조 공정 어느 단계에서나 아동 노동을 배제해야 하며, 이를 공시하도록 한다.

다만, 아동에게 해를 주지 않거나, 학교 등교에 방해를 주지 않거나, 아동의 성장에 필요한 활동 정도인 가벼운 노동(예: 오락 활동)은 아동 노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만약 기업이 기업의 활동 또는 영향권 내에서 아동 노동이 행해지는 것을 알았을 때, 기업은 아동 노동 방지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아동에게 정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국제노동기준은 15세를 최저 고용 가능 연령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근로기준법에서 15세미만(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아동 노동 금지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기업은 18세 미만 근로자가 그들의 안전, 건강, 윤리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환경에서는 어떠한 업무에도 고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기업은 18세 미만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가급적 야간 업무를 할당하지 않아야 한다.

5.4 기업은 고용, 보상, 승진 등에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기업은 성별, 연령, 학력, 인종, 국적, 피부색, 결혼여부, 임신, 종교, 지위, 재산, 장애,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 그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되며, 이를 공시하도록 한다. 기업은 근로자를 기본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고, 고용, 보상,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1. 근로자

또한, 기업은 신체적 징벌, 정신적·육체적 강요, 언어폭력, 성폭력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기업은 징계 조치 시 신체적으로 차별하거나 모욕감을 주지 않아야 하며,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기업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및 결사의 자유 보장, 아동 노동, 강제 노동 및 차별 금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II. 협력사 및 경쟁사

- 기업은 공정거래 및 법질서 준수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촉진하며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 해야 한다.
- 기업은 협력사에 대해 권력 남용, 뇌물 수수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를 지양함으로써 협력사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 기업은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조달 및 구매 등의 실행 과정에서 협력사의 사회적 책임을 도모해야 한다.

1. 공정거래

□ 기업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며, 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공정한 거래를 촉진한다. 기업은 또한 건전한 기업 문화 조성 및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한다.

1.1 기업은 공정거래를 통해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공정거래는 기업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제품 및 서비스 가격을 절감하며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

공정거래에 반하는 행위에는 제품 및 서비스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 행위, 제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의 부당한 조절 행위, 타 기업 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 행위, 경쟁 기업 배제를 위한 부당한 거래 행위,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 및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등이 포함된다.

기업은 공정한 거래를 위해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따라 기업의 활동을 수행하고, 관련 규제 기관에 협력하며, 기업의 활동과 관련된 공공기관 등에 뇌물 공여 및 그로 인한 부당·불법 이득을 취하지 않아야한다. 또한, 기업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와 공정거래의 중요성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 제고를 위해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공개한다.

기업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관여하거나 공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및 대책을 마련하고 공시하며, 공정거래를 촉진하는 공공정책을 지원한다.

1.2 기업은 경쟁사와의 거래에 있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기업은 제품 및 서비스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제품의 판매 또는

II. 협력사 및 경쟁사

서비스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기업은 타 기업의 사업 활동 또는 새로운 경쟁 기업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기업은 부당하게 경쟁 기업을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부당한 공동 행위의 금지〉

기업은 계약·협정·결의 등에 의해 타 기업과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제품 또는 서비스의 거래 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 조건을 정하는 행위
- 제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서비스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거래 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생산 또는 서비스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거래 시에 그 제품 또는 서비스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의 금지〉

기업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거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타 기업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

1.3 기업은 협력사와의 공정한 거래를 통해 서로 상생 협력하며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업은 협력사에 대해 부당한 납품 가격 결정, 세부적인 원가 자료 또는 기술 자료의 과도한 요구, 우월적 지위와 교섭력을 이용한 비용 및 부담의 과도한 전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행위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부당한 협력사 대금의 결정 금지〉

기업은 협력사가 납품하는 제품 등과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제품 등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부당하게 납품 대금을 정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납품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협력사를 차별 취급하여 납품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협력사에게 거래 물량 등 거래 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타 기업의 견적 또는 허위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협력사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납품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기업이 협력사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납품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경쟁 입찰에 의하여 협력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납품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등

〈기술 자료 제공의 강요 금지 및 객관적 제품 검사 기준 적용〉

기업은 협력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 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기업은 협력사가 납품한 제품에 대한 검사를 할 때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검사 기준을 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부당한 거래 취소·반품·감액의 금지〉

기업은 협력사에 제품 등의 제조를 의뢰한 후 그 제조된 제품 등에 대한 거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기업은 협력사로부터 제품 등의 납품을 받은 경우 협력사에게 책임을 전가할 사유가 없으면 그 제품 등을 협력사에게 반품하지 않아야 한다.

기업은 협력사에게 책임을 전가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를 의뢰할 때 정한 납품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지 않아야 한다.

1.4 기업은 물질적·지적 재산권 등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지위 남용·위조·표절 등의 침해 행위 금지〉

기업은 지배적 지위의 남용, 위조, 표절 및 다른 방법을 통해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일반적 재산권 존중〉

기업은 취득 및 사용한 재산권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즉, 기업은 물리적 재산인 토지 및

II. 협력사 및 경쟁사

기타 실물 자산에 대한 권리 등을 존중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은 재산권에 대한 존중을 장려하는 정책 및 실천 사항을 시행해야 하며, 재산을 사용 또는 처분하기 위한 소유권이 합법적인지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도 수행한다.

〈지적 재산권 존중〉

기업은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기업은 저작권, 상표권 및 특허권 같은 대표적인 지적 재산권뿐만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전통적 지식이나 임직원의 지적 재산권도 존중한다.

또한, 기업은 지적 재산권을 행사·보호함에 있어서 공익 및 인권을 고려해야 하며, 기술 이전 시에도 지적 재산권 존중 차원에서 시행해야 한다.

<u>2.</u> 부패방지

□ 기업은 협력시와의 거래에 있어 권력 남용, 뇌물 수수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를 근절하여 협력시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한다.

기업은 협력사와의 거래에 있어 권력을 남용하여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부패를 지양해야 한다. 부패는 윤리적인 기업 문화를 저해하며, 부의 분배와 경제 성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협력사와의 거래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급행료 및 뇌물 수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및 실천 사항을 수립·실행하며, 이를 공개한다.

기업은 협력사와의 거래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임직원의 노력을 지원하고, 그 노력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기업은 임직원에게 협력사와의 거래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부패에 맞서는 방법에 대해 교육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한다.

더 나아가서 기업은 임직원이 보복이나 해고에 대한 두려움 없이 협력사와의 거래에서 부패 사례를 고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공시하여 관련 고발 행위를 장려하며, 형사법 위반 행위의 경우 이를 관련사법 기관에 알려야 한다.

3. 사회적 책임 촉진

□ 기업은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차별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조달 및 구매 등의 실행 과정에서 협력사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한다.

3.1 기업은 조달 및 구매 등의 실행 과정을 통해 협력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다.

기업은 조달 및 구매 결정을 통해 협력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달 및 구매 정책에 사회적책임을 반영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한다.

기본적으로 기업은 합법적 노동 관행을 가진 협력사와 업무 관계를 맺어야 한다.

또한, 기업은 협력사 선정 과정에서 인권 및 노동 관련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 기업은 협력사에서의 단체결사 및 단체교섭의 보장과 아동 노동 및 강제 노동의 금지, 차별의 철폐, 안전하고 청결한 근무 환경 유지 등을 포함하는 인권 및 노동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협력사가 준수해야 하는 노동관행 강령은 세계인 권선언과 ILO의 노동기준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3.2 기업은 협력사 및 기업이 관계를 맺는 이해관계자들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기업은 협력사 근로자의 국적, 인종, 성별, 연령, 결혼여부, 임신, 장애, 언어, 종교 등 그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3.3 기업은 스스로의 사회적 책임만이 아니라 협력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도 촉구한다.

기업은 협력사의 인권 침해에 공모하지 않아야 하며, 협력사의 잘못된 노동 관행을 통한 혜택을 누려서도 안 된다.

또한, 기업은 협력사가 사회적 책임과 원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하며, 특히 중소 기업에게는 인식 제고뿐만 아니라 적절한 경우 성공 사례 소개 및 추가적 지원 등을 통해 도움을 준다.

3.4 기업은 협력사와의 다양한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협력사의 사회적 책임을 지원하며 협력사와의 상생관계를 유지한다.

기업은 협력사가 사회적 책임을 경영 방침으로 채택하고, 원칙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즉, 기업은

11. 협력사 및 경쟁사

사회적 책임의 원칙과 실천의 광범위한 도입 및 촉진을 위해 리더십과 멘토십 등을 통해서 다른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은 특히 협력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협력사와의 상생 관계를 유지해 나가며, 다른 한편으로는 협력사에서 제기하는 불만 사항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공시한다.

베. 소비자

- 기업은 공정한 방법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제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인 구매의사 결정을 내리고 소비자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기업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제품 및 서비스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고 관련된 책임을 져야 한다.
- 기업은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기업의 성과가 큰 영향을 받게 되므로, 소비자 쟁점과 관련된 사회적 책임을 적절히 이행함으로써 소비자와의 신뢰 있는 관계를 형성하도록 한다.

1. 소비자와의 공정한 거래

□ 기업은 광고, 마케팅 및 소비자와의 계약에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을 보장해야 하며,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1 기업은 공정한 광고 및 마케팅 관행을 유지해야 한다.

기업은 소비자와 의사소통을 할 때 그 목적이 광고 및 마케팅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성, 종교, 인종, 성적 취향 등과 관련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광고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소비자가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 구입 장소, 가격 및 거래 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1.2 기업은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해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기업은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매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불완전하고 오인될 수 있는 정보는 소비자가 필요하지 않은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결국 비용, 자원,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다. 또한, 기업은 정보 은폐나 축소를 통한 부당한 소비자 권유도 하지 않아야 한다.

〈제품 관련 정보〉

기업은 제품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제품 및 서비스의 표시와 매뉴얼, 제품 사용 방법에 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제품 표시를 알기 쉽고 명확하게 해야 한다.

〈제품 및 제품 포장의 폐기〉

기업은 제품 및 제품 포장의 폐기와 관련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기업은 A/S나 소비자 지원, 분쟁 해결,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관련 지원 및 안내 시스템도 제공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제품 품질 보증서, 사용 관련 기술적 지원, 환급 관련 조항 뿐만 아니라 수리 및 유지·보수 등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온라인 판매 및 통신 판매를 하는 기업은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를 공시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비즈니스 활동, 기업 지배구조, 재정 상태 및 성과 등에 관한 정보를 관련 법규 및 산업 내 모범사례에 준하여 공개하도록 한다.

1.3 기업은 소비자와의 계약에서 공정성 및 소비자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기업은 계약 체결 시 불공정한 약관 조항, 특히 부당한 면책 조항, 가격 및 제품의 일방적 조건 변경, 지급불능 위험의 책임 전가, 부당하게 긴 계약 기간 등을 포함시켜서는 안 되며, 특히 약관 조항 등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계약 시 가격과 용어, 조건, 비용 등에 관한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2. 소비자 안전 및 보건

□ 기업은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해 규제 당국이나 국제 표준에서 제시 하는 기준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까지 고려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2.1 기업은 소비자의 안전 및 보건을 고려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은 제품 및 서비스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한다. 따라서 기업은 일반적으로 예상 가능한 사용 조건에서 소비자나 소비자의 자산, 이외 타인 및 주변 환경에 위험 요인을 제공하지 않는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기업은 제품 개발의 경우 인체 독성, 발암성, 돌연변이성 등 위험성이 있는 물질의 사용을 피하고, 불가피하게 위험성이 있는 물질을 사용한 경우 그 위험성을 제품에 표기한다.

기업은 가능한 경우 새로운 재료나 생산 공정을 채택하기 전에 이로 인해 제품 및 서비스가 인체에 미치게 될 위험을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 시 관련 정보는 가급적 문서화 한다.

또한, 기업은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처리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관련 법, 규제, 표준, 설명서 등을 검토하고, 부족할 경우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한다.

2.2 기업은 소비자에게 제품 및 서비스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확한 안내는 소비자의 안전 및 보건에 있어 매우 중요하므로 기업은 문자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상징을 활용하여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더욱이 기업은 소비자의 부주의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안전 위험을 방지하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기업은 제품 디자인의 위험도 최소화하여 예상되는 소비자 그룹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명확히 제공하며, 사용에 따른 예측 가능한 위험을 밝힘으로써 그 위험도를 감소시킨다.

기업의 평판은 제품 및 서비스가 안전과 보건에 미치는 효과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므로, 예측하지 못한 결함과 위험이 발견되면 조속히 유통 중인 모든 제품을 회수, 폐기, 교환 및 수리하고,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3.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

□ 기업은 소비자 개인 정보를 합법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수집·사용·관리하여 소비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3.1 기업은 소비자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할 경우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다.

기업은 개인 정보를 수집해야 할 경우, 제품 및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필수 항목들로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미리 통보하여 자발적인 동의를 얻은 정보 및 사법 당국의 요청에 의한 정보로 한정한다. 특히, 기업은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명시된 목적 이외의 정보 공개 및 이용은 하지 않는다

3.2 기업은 적절한 보안 체계를 통해 소비자 개인 정보를 관리한다.

기업은 정보 보안 담당자의 신분 및 근무지 등을 공개하며,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근로자 교육도 실시하고, 이를 공시한다. 또한, 기업은 소비자가 개인 정보 보유 여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소비자에게 개인 정보 공개를 통한 위험을 알려야 한다.

4. 소비자와의 소통

□ 기업은 소비자인 요구를 최대한 충쪽시키고, 소비자인 눈높이에 맞추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며, 특히 제품 및 서비스 관련 소비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 체계를 마련하여 그 의견을 제품 및 서비스에 반영한다.

4.1 기업은 소비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피드백 받은 소비자의견을 제품 및 서비스에 적극 반영한다.

기업은 소비자가 제품 및 서비스 관련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고, A/S 지원 및 불만사항 해결 방법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콜센터나 웹사이트 등을 운영한다.

기업은 소비자의 불만 사항을 검토하고 이에 대응하는 실행방안을 마련하며, 더 나아가서 소비자가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이를 공시한다. 또한, 기업은 소비자가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의견을 기업에 제시하여 향후 제품 및 서비스의 개선에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4.2 기업은 소비자의 제품 및 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불만과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보상한다.

기업은 소비자 지원, 불만 및 분쟁 해결을 통해 소비자가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제공 받은 후 발생 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불만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도 마련하고, 이를 공시한다. 예를 들어, 기업은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기한 내에 제품을 교환환불해 주거나 다른 적절한 보상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은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상 지정된 품질 보증기간 이후까지, 또는 제품 예상 수명에 따라 적절한 보증기간을 제공한다.

또한, 기업은 제품 위험성을 포함한 안전 및 보건에 대해 소비자 인식을 제고시켜야 하며, 제품 및 서비스 관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안전한 사용 및 적절한 보상/보호 절차 등에 대한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공개한다. 그러나 만약 소비자가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교육을 실시했더라도 기업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기업은 보상 방법을 공시하고 소비자보호 관련 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소비자가 분쟁 등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배려한다.

더불어 기업은 국내 및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여, 분쟁 해결이나 불만 처리, 보상 절차 등이 무료 또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IV. 지역사회

- 교육·문화 및 보건 지원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
- 기업은 고용 및 소득 창출, 구매, 기술 지원, 기반 시설 투자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경제 발전을 도모한다.
- 기업은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가 지향하는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와 원활한 관계를 형성한다.

1. 지역사회 참여 및 공헌

- □ 기업은 기부금 제공, 봉사활동 수행, 교육 기회 중대, 문화 활동 지원 및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역한다.
- 1.1 기업의 임직원들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역 모임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에 적극 참여한다.

기업은 가능하다면 지역의 협회 기구 등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개발 및 공공복지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1.2 기업은 기부금 등 지역사회에 대한 보편적인 기부를 포함하여 지식, 기술, 인적·물질적 자원을 지원한다.

기업은 특히 지역사회 취약계층이나 저소득 계층을 위해 필수 제품 및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도록 한다.

1.3 기업은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 기회 제공 및 문화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

〈교육 기회 증대〉

교육이 모든 사회 및 경제 개발의 토대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기업은 지역사회의 교육 기회 확대, 교육의 질 향상, 지식 계발 촉진 등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기업은 초·중·고등 교육 등 단계별로 교육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에 참여하고, 문맹 퇴치에도 힘쓰도록 한다.

특히, 기업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이나 저소득계층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더불어 기업은 지역사회 아동이 공식적인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하고, 교육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아동 노동과 같은 장벽을 없애는데 노력을 기울인다.

〈문화 지원 및 문화적 유산 보존·보호〉

문화는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기업은 지역사회의 문화적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적 유산을 보존 및 보호 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특히, 기업은 문화적 유산, 특히 기업 활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역 또는 공간의 문화유산을 보존·보호 하는데 힘을 기울이며, 지역사회 주민의 지식과 전통의 이용을 장려하도록 한다.

1.4 기업은 보건 서비스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공공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지만, 어떤 기업이든 지역사회의 보건 시스템에 기여할수 있으며, 기업은 지역사회가 보건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기업은 의약품 및 예방 프로그램 제공, 유해한 약물 사용 금지, 운동 장려 및 영양 관리, 질병의 조기 발견 등을 통해 지역사회 보건 향상에 기여한다. 특히, 기업은 지역별 상황 및 우선순위에 따라 주요 질병 관리 및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도록 노력한다.

2. 지역 경제 발전

□ 기업은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한 지역사회 투자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2.1 기업은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빈곤을 퇴치하고 경제 발전을 도모한다.

기업은 지역사회 투자 결정이 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다면 직접 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빈곤 완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또한, 기업은 지역 내대학 및 연구소와의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며, 지역주민 고용현황을 공시하도록 한다.

특히, 외주를 주는 기업은 외주화가 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가능한 경우 지역의 제품 및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외주 우선권을 주도록 노력하며, 지역업체 선정 현황을 공시하도록 한다.

또한, 기업은 견습 프로그램이나 소외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자격 프로그램 등의 지역사회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한다. 만약 지역사회 내에 적절한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에는 지역사회 내 다른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2 기업은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특화된 지식이나 기술을 지역사회에 적용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기술 개발은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만족스럽고 생산성 높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므로 지역경제발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기업은 저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쉽게 배울 수 있고 비용이 적게 드는 기술 개발에도 힘쓰도록 한다.

또한, 기업은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우에는 기술 이전과 확산이 가능하도록 기술가치 평가와 기술 거래 등 합리적인 조건을 활용하도록 한다.

2.3 기업은 소득 창출을 위해 지역사회의 천연 자원 및 중간재 등을 사용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경제적으로 기여한다.

기업은 지역사회의 소득 창출을 위해 환경 파괴 및 자원 고갈을 야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역사회 천연 자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며, 천연자원 사용을 위해 지역사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한다. 또한, 기업은 지역사회 기업들이 생산한 중간재를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2.4 기업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역사회의 경제적 발전에 기여한다.

지역 기반 시설 투자는 기업이 지역사회의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기반 시설 등에 자원을 투입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지역 기반 시설 투자는 기업의 핵심 경영 활동과 관련이 있거나 그런 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며, 기업과 지역사회의 관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의 투자를 의미한다.

지역 기반 시설 투자의 종류에는 교육, 직업 훈련, 문화, 보건, 소득 창출, 사회간접자본 개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기타 활동들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가 있다.

지역사회에 대한 기반 시설 투자를 위해 기업은 기업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의 요구와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이에 맞추어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한, 기업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이 정한 투자 우선순위도 고려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음으로써 지역 기반 시설 투자의 효과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업은 지역사회가 그 프로젝트의 기획, 설계 및 실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기업이 더이상 관여하지 않게 될 경우에도 프로젝트가 실행되고 완성될 수 있게 해야 한다.

IV. 지역사회

또한, 기업은 기존의 지역사회 관련 프로젝트들을 평가하여 성공 여부나 지역 발전 효과 등에 관한 피드백 과정을 거치고,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 기업의 지역 기반 시설 투자 프로젝트에 참고하도록 한다.

3. 지역사회와의 소통

□ 기업은 지역사회 주민 또는 지역 기업과의 다양한 쌍방향 의사소통 기회를 통해 지역사회가 지향하는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업은 지역사회에 대한 지역 기반 시설 투자와 지역사회 개발 활동을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대표적인 지역사회단체 등과 체계적인 협의를 거침으로써 지역사회의 능력과 자원 및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특히, 기업은 지역 기반 시설 투자 및 지역사회 개발을 실행할 때 정보 공유와 컨설팅, 협의 등의 참여적 접근 방식을 취하도록 한다.